

# 심 사 보 고 서

2006.12.14( 목 )

제255회 정례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충청북도 정례회

○ 2006. 12. 14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국장 신강탁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12. 21자로 고시된 2006년 ~ 2007년 시·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-2206)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,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,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,072명으로 함(안 제2조)
  - (1)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: 변동없음
  - (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: 2,995명⇒3,059명(증 64명)
-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(안 제3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: 김재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표준정원(보정정원)내에서 2007년도 신설학교 소요인력과 각급학교의 학급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학교의 회계·학교운영 관리 및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2007년 6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3명을 정규직제화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7년 학교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일반직 19명, 기능직 18명

### 《학교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현황》

학교명	학급수	개교월	소요정원					기능직	합계	비고
			일반직				계			
			행정직							
			6급	7급	8급					
운동초	24	07.3			1	1		1	이전	
원현초	36	"	1		1	2	4	6		
샛별초	36	"	1		1	2	4	6		
장전초	30	07.9	1		1	2	2	4	BTL	
운동중	24	07.3	1	1		2	2	4		
송절중	24	07.3	1	1		2	2	4		
산남중	24	07.3	1	1		2	1	3	BTL	
송절고	30	07.3		1	1	2	1	3	BTL	
산남고	30	07.3		1	1	2	1	3	BTL	
목령고	24	07.3		1	1	2	1	3	BTL	
합계			6	6	7	19	18	37		

-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인력증원 27명
  - 일반직 : 13명, 기능직 : 14명
-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른 한시정원 조항 삭제
  - 한시정원 : 3명
- 학교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  - 초·중·고별 각급학교 인력배치 기준
  - 업무량증가에 따른 인력충원의 학교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“3,008명”을 “3,07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2,995명”을 “3,05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개정 2004.1.29 대통령령 제8247호)

**제14조(표준정원의 책정)**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(이하 “표준정원”이라 한다)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·분합,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·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·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.

**제17조 (한시정원)**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

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.

④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⑤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19조(정원의 규정)** ① 시·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
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

②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(개정 2004.1.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)

**제3조(표준정원)**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.

③ 영 제14조제2항에서 “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”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.03을 곱하여 산출한 정

원(이하 “보정정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시·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(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2206, 2005.12.21)

구 분	표준정원	보정정원	비 고
충청북도교육청	3,072	3,164	